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김춘곤 의원
- 나. 의안번호 : 제2178호
- 다. 발의일자 : 2024.10.15
- 라. 회부일자 : 2024.10.18

2. 제 안 사 유

-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경우 전액 감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감면에 필요한 일반회계 보전이 2008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서울아리수본부의 재정적 부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해당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수도요금 감면 대상의 하나인 ‘천재지변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지역으로 변경하여 감면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나 감염병 등에 따른 사회재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시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수도요금 감면 내용 중 천재지변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지역으로 변경함(안 제31조제1항제1호).29조제4항

나. 수도요금 감면 내용 중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등을 삭제함(안 제31조제1항제4호).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용수 구경별 기본요금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며, 천재지변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지역으로 하여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요금 감면 방법과 감면을 등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 시행규칙(제27조)에서 정하고 있음.
- 천재지변은 지진·홍수·태풍 등의 자연재난을 의미하고 현행 조례에 따라 자연 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시 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화재·붕괴·감염병 유행 등 사회재난 시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그러나 최근 「수도법」 개정¹⁾에 따라 2025년 1월 24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²⁾(사회재난 포함) 피해를 입은 경우

1)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2024년 1월 23일 개정, 2025년 1월 24일 시행).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수도요금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음.

따라서 안 제31조제1항제1호와 같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재난 외에 사회재난 발생 시에도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일 것임.

- 안 제31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소방용수 구경별 기본요금을 2000년부터 전액 감면해 왔으나, 2009년 시 재정 부담을 사유로 일반회계 보전이 중단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일반회계 보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소방용수 요금부과³⁾는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해 대부분 대구경(100mm, 99.6%)을 이용함에 따라 실제 수도사용량에 비해 구경별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되는 구조로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음.

<최근 5년간 소방용수시설 상수도 요금 부과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구경별기본요금(가)	64,453	64,460	64,634	64,682	32,341
사용요금(나)	726	954	920	837	112
상수도 요금(가+나)	65,179	65,414	65,554	65,519	32,453

- 따라서 요금부과 구조의 불합리성, 일반회계 보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방용수 구경별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요금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막고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한 합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상당수가 구경별 기본

3) 구경별기본요금과 수돗물 사용요금의 합으로 부과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와 같이 부과하여 감면하는 경우는 일반회계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음.

<타 지자체 소방용수 구경별 기본요금 감면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제주
구경별 기본요금	감면	감면	미부과	감면	미부과	감면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보전 여부	미보전	미보전	-	미보전	-	미보전	-	-	-

- 안 제31조제1항제8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 삭제는 적용 기한⁴⁾만료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4) 2022년 1월납기분부터 6월 납기분에 한해 감면